

투자위험등급:
5 등급
[매우낮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K-5 호)**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K-5 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클래스원신종 MMF(K-5 호)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4. 판 매 회 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 성 기 준 일 : 2013년 3월 14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3년 3월 20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MMF 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유용한 현금관리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대상 내역
양도성 예금증서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에 한함
채무증권 (채권, 기업어음)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 제71조제4호 나목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어음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
단기대출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 매도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기타 다른 투자대상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운용방침

-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이자수익의 확보에 주력합니다.
- 신탁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정을 통하여 유동성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합니다.
- 국고, 통안채 위주로 투자하여 신용리스크 최소화 합니다.
- 예금 및 우량 CD 에의 투자로 안정적 수익률확보 및 유동성 확보에 Focus 를 둡니다.

(2) 비교지수 : 비교지수 : Call 금리 X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Call 금리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및 가중평균잔존만기 조절을 통하여 유동성확보를 위한 위험관리에 주력합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단기금융투자신탁(MMF)의 경우 수익구조가 은행의 예금과 유사하지만,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어음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 개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 의 괴리 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 위험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5등급 중 5등급에 해당하는 수준(매우 낮은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투자위험이 적은 대신 기대수익도 낮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투자가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를 통하여 현금관리를 유용하게 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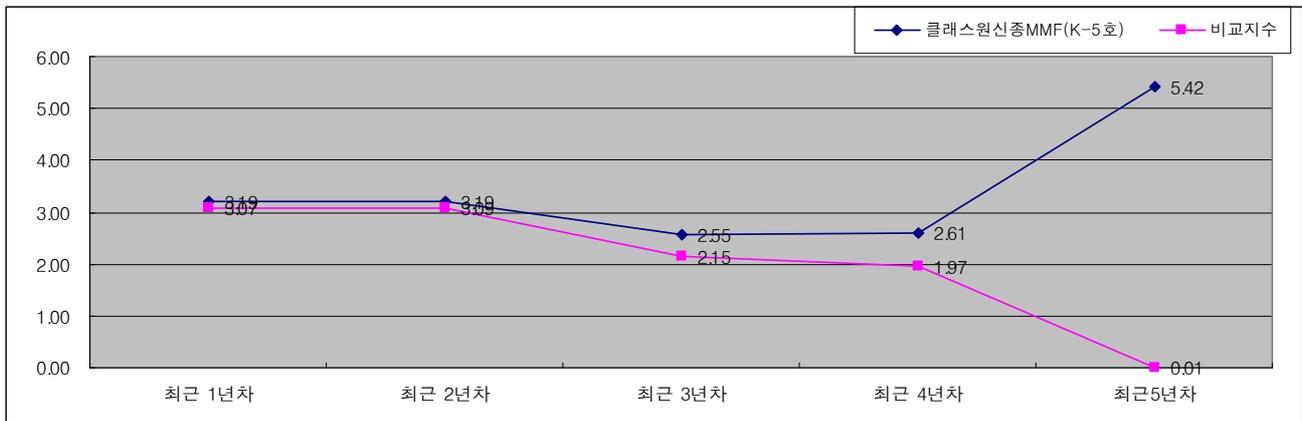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 UBS 자산운용(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3.3.13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전나영	1975	차장	30 개	31,987 억	- 경원대 중어중문학과 - 채권운용 8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2013년 1월 1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2/01/02~ 2013/01/01	2011/01/02~ 2012/01/01	2010/01/02~ 2011/01/01	2009/01/02~ 2010/01/01	2008/01/02~ 2009/01/01
클래스원신종MMF(K-5호)	2004-01-02	3.19	3.19	2.55	2.61	5.42
비교지수	2004-01-02	3.07	3.09	2.15	1.97	0.01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가입대상	법인투자자	
집합투자업자보수	0.0450%	매 6 개월 후금
판매회사보수	0.0900%	
신탁업자보수	0.015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00%	
기타비용 ^{주 1)}	0.0042%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1642%	
증권 거래비용 ^{주 2)}	0.0034%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13.1.1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3.1.1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보수·비용(원)	16,828	53,051	92,987	211,664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가 얻은 모든 수익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한 일반기준가와, 과세 목적을 위한 과표기준가를 계산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및 최고한도세율은 관련 세법 등의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하실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2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3) 매입/환매 방법적용 예외 사항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매입 및 환매가 가능합니다.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판매회사가 투자자의 매입대금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MMF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환매청구일 이전에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환

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MMF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MMF의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2013.01.01	2012.01.01	2011.01.01
운용자산	1,381,117,449,740	2,104,907,437,147	1,836,760,376,643
유가증권	390,579,806,197	750,354,451,919	879,696,236,137
현금 및 예치금	598,294,407,475	791,445,704,517	772,329,593,057
기타 운용자산	392,243,236,068	563,107,280,711	184,734,547,449
기타자산	9,451,858,067	28,880,174,580	14,989,669,782
자산총계	1,390,569,307,807	2,133,787,611,727	1,851,750,046,425
기타부채	44,981,262,232	68,131,168,480	48,403,255,348
부채총계	44,981,262,232	68,131,168,480	48,403,255,348
원본	1,345,588,045,575	2,065,656,443,247	1,803,346,791,077
자본총계	1,345,588,045,575	2,065,656,443,247	1,803,346,791,077
운용수익	63,128,418,244	62,425,557,744	69,506,790,893
이자수익	64,539,201,289	66,684,679,820	81,414,141,056
매매/평가차익(손)	-1,411,087,058	-4,260,727,929	-11,910,936,148
기타수익	304,013	1,605,853	3,585,985
운용비용	3,774,711,379	3,711,435,503	5,101,972,085
관련회사보수	3,603,094,996	3,562,615,064	4,908,388,861
매매수수료	63,733,875	69,143,699	84,093,324
기타비용	107,882,508	79,676,740	109,489,900
당기순이익	59,353,706,865	58,714,122,241	64,404,818,808